

『구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
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 활용방안 건의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3월 28일

나. 제 안 자 : 구미시의회 김익수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28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3월 29일

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구미시의회 의원 김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국가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첨단 IT산업을 기반으로 지난해 말 수출 273억불(흑자수출 160억불)을 달성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있음.
-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R&D인프라와 산학협력네트워크기능 등이 취약하여 기술·지식의 창출과 확산이 선 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로 기능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임.
-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구축과 관련하여 금년 2월 이전을 완료한 국립 금오공대 舊 캠퍼스시설과 부지활용이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됨.
-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 구미공단을 디지털 전자집적지조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화 시범단지 지정과 함께 혁신

지원중심기능을 담당할 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을 위하여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임.

- 지난 2월 정부에서는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의결하면서 "매각"이라는 지역의지와는 상반된 결정으로 이행절차를 진행하고 있음.
- 따라서, 舊 금오공대시설 및 부지에 대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는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임으로, 舊 금오공대캠퍼스 부지 및 시설을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 안을 건의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최소의 예산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은 舊 금오공대 시설을 리모델링 하는 방법만이 최적임을 감안하시고 부지매각 방침을 철회하여 소중한 국가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중앙의 관련부처간 재 협의 요구.
-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는 비단 구미와 대구경북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항 이므로, 舊 금오공대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재산권을 산업자원부로 이관 하여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요구.

라. 참고사항

- 구 금오공대부지 활용계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구 금오공대 부지는 구미시 신평동 188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의 대지 27,650평에 교육·연구·지원시설 등 건물 17,150평으로서 금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전완료 되어,

- 이와 관련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구미국가산업단지가 혁신클러스터 시범단지로 지정되면서 구 금오공대 부지·시설을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단지공단 중부지역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관기관 혁신클러스터 T/F팀 활동을 통해 클러스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경북도와, 산업단지공단 등 관계기관합동으로 중앙부처방문건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추진하여
- 2005년도 정부예산에 구 금오공대부지 및 시설활용계획과 관련한 디지털전자산업관건립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함과 함께 시설 리모델링 예산 244억원을 클러스터사업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산업단지공단중부지역본부에서 요청해 놓은 상태임.
- 하지만, 지난 2월 정부에서 "금년도국유재산관리계획"을 심의하면서 금오공대이전과 연계한 특별회계세입 재정보전이행금 443억원의 세입충당 문제로 부처간 협의가 무산되어 "매각"하기로 결정 현재 매각처분절차 추진 중에 있는 실정임.
- 따라서, 내륙최대의 국가공단이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새 활로를 개척하고 R&D인프라와 산학연협력네트워크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의 소중한 재산이 국가와 지역발전에 유용한 공익재산으로 활용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구 금오공대 부지 및 시설을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활용을 건의안을
- 청와대, 교육인적자원부, 재정경제부, 산업자원부, 기획예산처, 등 관련부처에 건의코자 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건의안 채택